



금융감독원

보 도 자 료



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2025.11.27.(목) 석간	배포	2025.11.26.(수)	
담당부서	회계감독국 감사제도운영팀	책임자	팀 장	최진혁 (02-3145-7977)
		담당자	조사역	이승환 (02-3145-7763)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 주요 내용 -

◆ 12월 결산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회사의 **상장 여부, 자산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회사의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준수하여야 합니다.
- ✓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

구 분	선임기한 ^{주1)} [사업연도 개시일(D)]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감사인 선정권자
① 주권상장회사	D + 45일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	3개	등록회계법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주2)}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주3)})
②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회계법인	
③ 기타비상장주식회사	D + 45일	1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주2)}
④ 유한회사	D + 45일			감사 ^{주2), 주4)}

주1) 단,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주2)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선정

주3)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

주4)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

※ 회사 유형별 자세한 내용은 (붙임2) 참고

I. 외부감사제도 개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 정보의 신뢰성 제고 및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외부감사대상 판단 기준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일정규모 이상	2가지 이상 해당 ① 자산 120억원 이상 ② 부채 70억원 이상 ③ 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 종업원수 100명 이상	3가지 이상 해당 ①~④ 좌동 ⑤ 사원수 50명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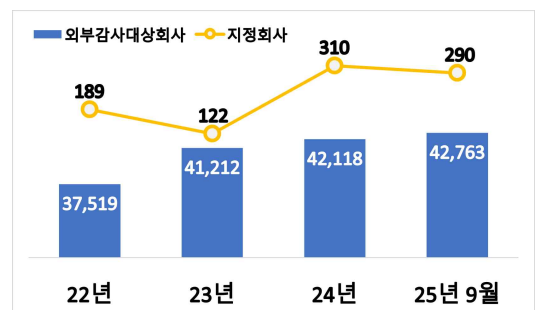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외부감사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됨
- 일부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발생
- ➡ 이에 따라 회사가 사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상장여부, 회사규모 등에 따라 지켜야 할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감사인 선임관련 위반으로 인한 감사인 지정현황

(단위: 사)

구 분	'22년	'23년	'24년	'25.9월
외부감사 대상회사	37,519	41,212	42,118	42,763
지정회사 수 (선임기한 절차위반)	189	122	310	290



II. 감사인 선임제도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①선임기한, ②선임대상 사업연도, ③감사인 자격요건, ④선정권자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① 선임기한

○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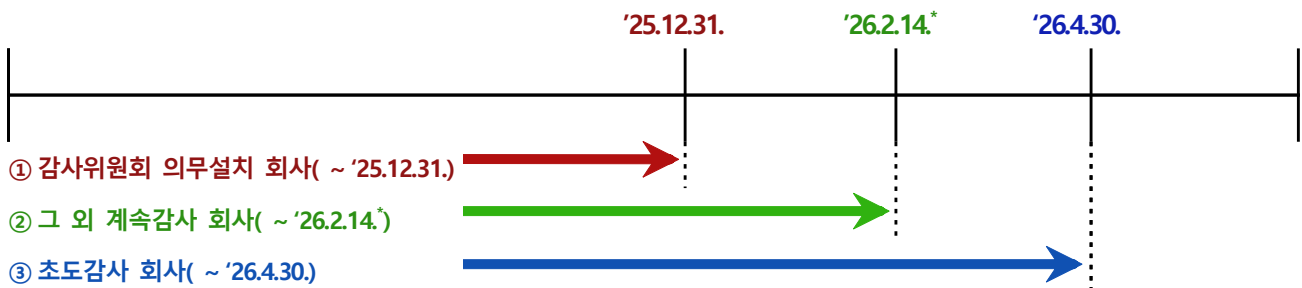
*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함

* ①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 제3조제3항의 회사는 제외)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선임 가능

<예시> 12월 결산 회사의 2026년 감사인 선임기한



* 2026년의 경우 2월14일이 토요일이므로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인 2월19일까지 감사인 선임가능

감사인 선임기한 위반 예시

□ A사(12월 결산)는 '24년 결산결과 자산총액이 550억원으로 '25년에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고, '25.4.30. '가'회계법인과 초도 감사계약을 체결

○ '26사업연도에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어 직전사업연도와 유사한 시점인 '26.4.30. 감사계약을 체결

➡ '26사업연도에는 계속감사 회사에 해당하므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26.2.14.*)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동 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외부감사법 위반

* 2026년의 경우 2월14일이 토요일이므로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인 2월19일까지 감사인 선임가능

② 선임대상 사업연도

-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 ① 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회사 또는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선임대상 사업연도 위반 예시

- B사는 '24년 대형비상장회사 → '25년 기타비상장사 → '26년 대형비상장회사로 회사 유형이 변경되었으며, '24년에 '나'회계법인과 3년 감사계약('24~'26)을 체결하고 '나'회계법인을 '26사업연도까지 감사인으로 유지
- ➔ 다시 대형비상장회사가 된 '26사업연도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재선정하고, 3년('26~'28) 감사계약을 체결했어야 함에도 ①감선위 개최없이 ②기존 계약만('26) 유지하여 외부감사법 위반

③ 감사인 자격요건

- 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하나,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하며
- 특히,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現 39개)에 한하여 감사인 선임이 가능함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상장회사

감사인 자격요건 위반 예시

- C사는 상장을 위해 '25사업연도 지정감사를 받았으나, '26사업연도에는 상장 가능성이 낮아 미등록인 '다'회계법인과 자유선임 계약을 체결
- 예상과 달리 '26사업연도 중순 상장이 되었지만, 기존 감사계약을 체결한 미등록 '다'회계법인과 '26사업연도 감사를 진행
- ➔ 상장 후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했어야 함에도 미등록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유지하여 외부감사법 위반

④ 감사인 선정권자

-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하여야 함

*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한 경우 포함

**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회사

- 그 외 기타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선정할 수 있음

*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승인이 필요

감사인 선정권자 위반 예시

- D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24년말 자산총액이 900억원인 비상장 회사'로서, 동사의 감사는 '25사업연도 감사인으로 '라'회계법인을 선정
 - 합병으로 '25년말 자산총액이 5,100억원이 되어 '26사업연도에 대형비상장 회사가 되었으나, '25년과 동일하게 감사가 '26사업연도 감사인을 선정
 -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대형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선위 승인**을 받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동일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26사업연도에 ①**감선위 승인**을 거치지 않고 ②**1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감사계약**을 체결하여 **외부감사법 위반**

⑤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

- 감선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법령상 자격(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2조)을 갖춘 5명 또는 6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

*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

- 감선위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감선위 위원이 전원 동의할 경우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 등 3인의 전원 출석으로 감선위(약식 감선위) 개최 및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가능

*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주주·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 임직원·기관투자자 임직원 중 1인

<참고> 약식 감선위에서 외부전문가의 역할

- 외부전문가는 약식 감선위 위원이 아닌 **위원장으로만** 참여 가능
- 정식 감선위와 달리 **외부전문가**가 주주·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 임직원·기관투자자 임직원을 대신하여 **약식 감선위 위원으로 참여 불가**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 위반 예시

① 위원자격 및 위원 수

- E사는 '26 ~ '28 사업연도에 대해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신규 감사가 선정한 '마'회계법인과 자유선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감선위 구성 시 신규 감사, 사외이사 2명,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주주 등 5명으로 감선위 위원을 구성
 ➔ 감선위를 5명으로 구성할 경우 감선위 위원으로 사외이사를 1명만 포함해야 하므로 **외부감사법 위반**
- F사는 '26 ~ '28 사업연도에 대해 사내이사 및 회계팀장을 외부전문가 자격으로 감선위를 구성하여 '바'회계법인과 자유선임 계약
 ➔ 사내이사(상법상 비상무이사 포함) 및 직원은 감선위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외부감사법 위반**

② 부적격 위원장 임명

- G사는 '26 ~ '28 사업연도에 대해 내부감사를 감선위 위원장으로 하여 감선위를 구성하고 '사'회계법인과 자유선임 계약을 체결
 ➔ 회사의 내부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선위 위원장이 될 수 없으므로 **외부감사법 위반**

③ 약식 감선위 운영방법 위반

- H사는 '26 ~ '28 사업연도에 대해 **약식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자'회계법인과 자유선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부전문가가 위원장이 아닌 위원으로 약식 감선위에 참석**
- ➔ **외부 전문가**는 **약식 감선위 위원장**으로만 참여가 **가능**하고, 주주·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 임직원·기관투자자의 임직원을 대신하여 **약식 감선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외부감사법 위반**

⑥ 감사인 선임보고

-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하나,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보고하여야 함

* 3년 연속 계약 의무에 따른 2년차 또는 3년차 계약의 경우 회사의 보고의무 없음

감사인 선임보고 위반 예시

- 대형비상장회사인 I사의 감사는 '자'회계법인과 체결한 **3년 감사계약('23~'25)**이 만료됨에 따라, **감선위 승인을** 받아 직전 사업연도와 **동일한 회계법인을 '26사업연도 감사인으로 선정**
- '26.2.10. '자'회계법인과 3년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직전 사업연도와 감사인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감사인 선임보고를 생략**
- ➔ 감사인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함**에도, 선임보고를 하지 않아 **외부감사법 위반**

III. 향후 계획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26년 1월 예정)하는 한편,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 (☎ 02-3145-7767 / 7763)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안내 예정
- ※ (붙임) 1. 감사인 선임제도 도식도
(붙임) 2.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참고) 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안내
(참고) 2. 선임보고 방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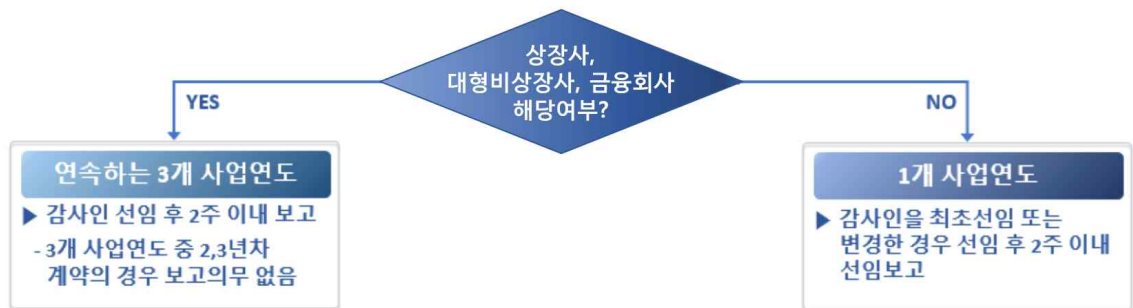
붙임1

감사인 선임제도 도식도

1 선임 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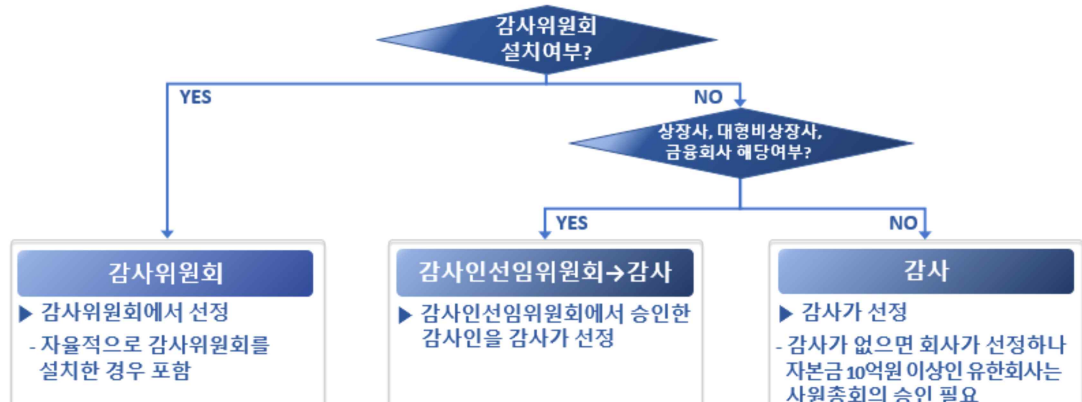
2 사업 연도



3 감사인 자격 요건



4 선정 권자



붙임 2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1

주권상장회사*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 코넥스시장 상장회사

-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6.2.14.까지* 감사인을 선임(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도 감사인 선임 가능)

* 2026년의 경우 2월14일이 토요일이므로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인 2월19일까지 선임가능

-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상법 §542의 11.①, 영§37.①)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5.12.31.) 감사인 선임

※ 지배회사와의 감사인 일치를 위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감사인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 지정 신청을 완료해야 함

- ☐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 ☐ **(감사인 자격)**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現 39개)만 선임 가능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 **(선정권자)**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

☞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금융회사**

- * ❶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전기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❷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5조원이상) 소속회사 : 전기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❸ 이외에 비상장주식회사 : 전기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6.2.14.까지* 감사인을 선임(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도 감사인 선임 가능)

* 2026년의 경우 2월14일이 토요일이므로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인 2월19일까지 선임가능

-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5.12.31.) 감사인 선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3③의 회사는 제외)

-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감사반 불가)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권자)**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

☞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예)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 제외)

-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
- ③ 다음중 2가지 이상 해당(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6.2.14.까지* 감사인을 선임(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도 감사인 선임 가능)

* 2026년의 경우 2월14일이 토요일이므로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인 2월19일까지 선임가능

- 단,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는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인 '26.4.30.까지 선임

※ 만약 자산 등 규모 축소로 외감대상에 포함될지 불분명한 회사는 기한 내 감사인을 선임하고 결산이 종료된 후 제외신청 가능

☐ **(선임대상 사업연도)**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권자)**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유한회사

-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
- ③ 다음중 3가지 이상 해당(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⑤사원수 50명 이상)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의 요건과 동일하게 판단함에 유의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6.2.14.까지*' 감사인을 선임(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도 감사인 선임 가능)

* 2026년의 경우 2월14일이 토요일이므로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인 2월19일까지 선임가능

- 다만, 초도감사*인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26.4.30.까지 선임

*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

☐ **(선임대상 사업연도)**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 **(선정절차)**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다만, ①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②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참고 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안내

- **(위원 수)** 반드시 5인 또는 6인으로 구성(6인 초과 불가)
- **(구성원)** 각 구성원별 한도 있음(사내이사·대표이사 등은 불가)
 - ①감사 1명, ②사외이사 2명 이내, ③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④주주 1명 (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 ⑤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1명
- * 지배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 회사의 임원인 주주,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 투자자 주주는 제외

【참고】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방법 예시

- 5인으로 구성하는 경우 : 감사 1명, 사외이사 1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 임직원 1명
- 6인으로 구성하는 경우 :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 임직원 1명

- **(대리행사)** 기관투자자·주주·채권금융회사 위원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가능
- **(외부전문가)**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
 - * 외부전문가의 대리인 선임은 불가능
 - ** 사외이사를 외부전문가로 충원하는 것은 불가
-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중 호선으로 선출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 호선하여 결정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내부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회의 개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선헌 전원 동의시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가능
 - *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주주·채권금융회사·기관투자자 위원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3인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

참고 2

선임보고 방법 안내

-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와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금융은 튼튼하게

금융감독원은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환경과 다양한 위험요인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DART 접속시스템 고유번호로 로그인



원격지원서비스



외감선임 및 제외 문의 02. 3145. 7767
기타 보고제도 문의 02. 3145. 7763
로그인 & 인증서 문의 국번없이 1332 (5번)
시스템(오류) 문의 02. 3145. 5463

*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32(이후 ⑤→①→①)

- ②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 후 화면 왼쪽에서 '감사인 선임보고서'를 클릭

기본정보

회사 · 제출서류

감사인 · 제출서류

수시보고 접수

접수현황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감사인 선임보고서

외감대상 제외신청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감사전 연결 재무제표 제출

감사인 지정(재지정) 신청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제출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 (상장법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 (대형비상장법인)

감사계약 해지보고

감사인 선임보고서

1. 회사개황

1-1 회사명

운영서비스

1-2 회사고유번호

00000000

1-3 법인등록번호

1111112222224

1-4 사업자등록번호(분점)

116-82-14464

1-5 법인구분

선택

1-5-1 금융회사에 해당 여부

선택

1-5-2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여부

선택

1-5-3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 여부

선택

1-5에서 유한회사인 경우

1-5-4 변경일자(1-5-3에서 '예'인 경우)

YYYYMMDD

보고제도 문의

02. 3145. 7767

시스템 문의

02. 3145. 5463

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항 내용 작성

감사인 선임보고서

보고제도 문의 02. 3145. 7767
시스템 문의 02. 3145. 5463

1. 회사개항

1-1 회사명	운영서비스	1-2 회사고유번호	00000000
1-3 법인등록번호	1111112222224	1-4 사업자등록번호(본점)	116-82-14464
1-5 법인구분	선택	1-5-1 금융회사에 해당 여부	선택
		1-5-2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여부	선택
1-5에서 유한회사인 경우	1-5-3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 여부	선택	
	1-5-4 변경일자(1-5-3에서 '예'인 경우) ?	YYYYMMDD	
1-6 감사위원회의 설치 여부 ?	선택	1-6-1 감사위원회의 설치 대상여부 ?	선택

- * 항목별 작성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업무자료(회계)→외부감사인 선임→외부감사FAQ→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 자료 게시를 참고

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2. 제출할 문서 첨부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2-1 감사인 선임보고 제출 공문		파일 선택
2-2 감사계약서 사본		파일 선택
2-3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		파일 선택
2-4 감사인 교체 사유		파일 선택
2-5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파일 선택
2-6 감사위원회 의사록		파일 선택
2-7 감사인 선임 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의사록		파일 선택

- * 회사개항에 따라 첨부문서의 활성화 여부가 달라지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외의 서류가 활성화되는 경우 회사개항 정보를 다시 확인

⑤ 제출 후 '접수현황'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가능

회사 · 제출서류 감사인 · 제출서류 수시보고 접수 **접수현황**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신) 제출현황

보고구분 접수일자 2020.12.14 ~ 2021.12.14

처리상태

총 4 건

접수번호	보고구분	첨부파일	접수일시	처리상태	비고	처리일자	확인중
20211009000001	지정기초자료 신고서(회계법인)		2021.10.09 12:45:54	접수완료			
20210819000003	감사인 선임보고서		2021.09.19 11:46:59	접수완료			조회

⑥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제출'을 통해 업로드

감사인 선임보고서

1-12 감사인 대리제출 여부 아니요

2. 제출할 문서 첨부

2-1 감사인 선임보고 제출 공문	제외신청(연락불가).pdf
2-2 감사계약서 사본	1. 세니젠_외감사계약서_2022.pdf
2-3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별첨1) [금융감독원] 2022년 제10차 감사인 지정 분통지(회계법인).pdf
2-4 감사인 교체 사유	
2-5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2-6 감사위원회 의사록	
2-7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의사록	
2-8 감사인 대리제출에 대한 위임장	

- * 재제출 방법 : 접수현황→수정 대상 서류의 접수번호 클릭→수정(재제출) 클릭→내용 수정 및 문서 첨부하여 접수
- * 처리상태 관계없이 재제출 가능하며, 수정을 반복한 경우 마지막 접수서류 기준으로 처리